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보도(歩道)에 정류소 설치 의무화 및 정류소 실태조사 도입 〉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10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제2208110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보도(歩道) 또는 안전시설 설치된 곳에 정류소 설치 의무화(안 제13조의2 신설)	2
2. 정류소 실태조사 도입(안 제13조의3 신설)	7
※ 참고자료	13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22081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2. 12.
3. 회 부 일 : 2025. 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길 가장자리 및 차도에 설치된 정류소로 인하여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정류소의 설치 위치 및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도(歩道)가 아닌 곳에는 원칙적으로 정류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보도가 아닌 곳에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정류소 등 대중교통시설의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보도(歩道) 또는 안전시설 설치된 곳에 정류소 설치 의무화(안 제13조의2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버스 정류소¹⁾를 보도(歩道)²⁾에 설치하도록 하되, 보도에 설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2(정류소의 안전 확보) 정류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歩道)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보도에 설치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보도가 없어 정류소가 길 가장자리나 차도에 설치되는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정류소를 보도 또는 안전시설이

-
- 1) “정류소”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 2) “보도”(歩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

설치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임.

다만, 법체계적 측면에서, ‘정류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버스(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로 세분³⁾)가 정차하여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하는 장소로서, 정류소의 설치 및 시설에 관한 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해당 운송사업의 면허기준(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또는 등록기준(마을버스)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관할관청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정류소의 설치 장소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려면 「여객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이하 생략)

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그 하위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며, 대중교통의 육성·지원 및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4)5)이 직접 규율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정류소 설치·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u>부대시설</u> , 그 밖에 <u>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u> 에 적합할 것 3. (생략) ②~④ (이하 생략) 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u>부대시설</u> ,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	제14조(면허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u>운송부대시설</u>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하 생략) 제23조(등록기준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u>마을버스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u> . (이하 생략)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장(章)의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장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지원, 제4장 대중교통에 관한 연구·조사 및 평가,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으로 구성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12. 2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제14조제1항 관련)

3. 운송 부대시설

구 분	시 설 기 준
가. 사무실 및 영업소	(생 략)
나. 정류소	정류소는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매표시설 및 표지 등을 설치할 것
다.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	(생 략)
라. 휴게실 및 대기실	(생 략)
마. 교육훈련시설	(생 략)

비고

1. (생 략)

2. (본문 생략)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12. 2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제23조 관련)

3. 운송 부대시설

가. 운송 부대시설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3호(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

한편, 안 제13조의2에 따르면 기존의 정류소 중 보도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정류소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일부 안전시설 설치가 곤란한 정류소의 폐지와 이에 따른 시민의 편의성 저하도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정류소 설치 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류소 설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 상 부적절함.

정류소는 교통편의, 안전 위해요소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설치·관리 중이며, 정류소별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안전시설 설치를 일률 의무화하는 것은 지자체 부담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음.

2. 정류소 실태조사 도입(안 제13조의3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정류소에 대한 실태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류소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그 결과 및 조치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대중교통시설 설치·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3조의3(정류소의 실태조사 등) ①</u> <u>시·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정류소의 설치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 <u>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시설의 설치·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u> <u>③ 시·도지사는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치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과 같이 정류소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에 따른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경우 정류소의 미비점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개정안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성이 인정될 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거나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시설 중 ‘버스정류소’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은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 전반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률로서, ‘버스정류소’는 터미널, 역, 선로, 환승시설, 선착장 등 여러 종류의 대중교통시설 중 하나이며, 현행 「대중교통법」에서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시설 중 한 종류를 정하여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는 없는 상황임.

【 「대중교통법」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범위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 마.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객선과 도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시설 또는 공작물

둘째, 현행법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 관련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대중교통현황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참고1. 참조), 이러한 체계 내에서 정류소를 포함한 대중교통 시설에 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류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일정 부분 시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음.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5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과 이를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들 계획에는 대중교통시설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중교통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 사항에는 대중교통시설 현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1. 참조)

이에 따라 실제 지자체에서는 버스정류소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정책을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5년 단위) 및 연차별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정류소 안전 확보 및 편의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⁶⁾.

셋째, 안 제13조의3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정류소 실태조사를 실시하

6) 세종시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22~'26)에 따라 버스 정류장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다수 노선이 정차하는 버스정류장에 싸인블럭 및 휠체어 탑승위치 표기 등 설치사업 추진한 사례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류소의 장소나 시설은 잦은 변화요인이 없어 조사주기가 짧으면 실태조사를 거듭할수록 효과성은 떨어지며 지방 재정 여건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후적인 개선 조치가 연차별로 나누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사주기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 법률안의 비용추계서(국회예산정책처 작성)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가 매년 전국 16만 개 이상의 정류소에 대해 설치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027년 이후 5년 간 183억 8,100만원(연평균 36억 7,600만원) 이상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⁷⁾.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버스정류소 수(개소)	160,308	160,308	160,308	160,308	160,308	—
정류소 실태조사 단가(만원)	2.2	2.2	2.3	2.3	2.4	—
합계	3,532	3,603	3,675	3,748	3,823	18,381

주 1.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산한 사항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 향후 버스정류소 수의 변동, 조사주기 및 방법, 단가 등에 따라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8110호) 비용추계서

7) 2024년 기준 전국 버스정류소 수는 160,308개이며, 매년 이 수준의 정류장에 대해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추계

나. 국토교통부 의견

정류소 실태조사를 통한 안전점검 취지는 공감하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전국 16만 개 정류소에 대한 전수조사 시 연간 최소 36억원 소요), 환경변화가 많지 않은 정류소에 대한 연 단위 전수조사의 비효율성 및 현행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기존의 현황조사 및 개선사업 실시 체계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할 때 연 1회 이상 정류소 실태조사 의무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4

참고 1

대중교통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대중교통현황조사 관련 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상대중교통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중교통의 현황과 전망
2.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3. 대중교통수단간 수송분담률의 현황과 목표
4.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정보의 제공 등 대중교통정보화에 관한 사항
6. 비수익 노선 대중교통수단의 현황과 향후 운행조정 및 지원 방향
7. 자가용 승용자동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8. 자전거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의 연계성 향상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2. 「철도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운수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3.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에만 소재하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이하 “지방대중교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 수립 시 지방대중교통계획에 포함되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반영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대중교통시설 관리청 및 인접 지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시장 또는 군수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방대중교통계획에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지방대중교통계획간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관할 구역이 인접한 둘 이상의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이 같은 교통생활권에 포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대중교통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대중교통현황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관련 사회·경제적 지표

2.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여건

3.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현황**

4. 대중교통의 이용실태

5. 차종별 교통량 현황 및 대중교통수단의 시간대별 도로별 운행속도

6. 그 밖에 대중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 및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